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79
----------	-----

2012년 7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5월 4일, 김형식 의원(찬성 23명)
- 나. 회부일자 : 2012년 5월 7일
- 다. 상정결과 :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 6월 25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형식)

가.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시장현대화 시설물(아케이드)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정비를 통하여 지역 상권의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과 소상공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시장현대화 시설물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상가번영회’로서 영세상인이 부담하는 회비로는 유지 보수 비용도 부족한 실정으로 재산세 등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특례(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2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로 변경함(안 제11조).
-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를 “면제된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특례(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추징한다”로 변경함(안 제11조 단서조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 지방자치법 제22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23조(취득 및 관리)

4.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박 용 훈)

- 본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육성법」) 제20조에 따른 사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현행 면제하고 있는 ‘취득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 과세특례(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2호)’¹⁾ 및 ‘지역자원시설세’²⁾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

1) 2010년 법령(「지방세법」) 개정(2010.12.27)으로 종전의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되, 기존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특례' 규정을 두었음(지방세법 제112조).
※ 지방세법 제112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함.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u>취득세를 면제</u> 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u>취득세를 추징</u> 한다.	제11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u>취득세와 재산세 과세특례(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u> 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u>취득세와 재산세 과세특례(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2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추징</u> 한다.

○ 현재 「전통시장육성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고객쉼터, 화장실, 비·햇빛가리개(아케이드), 고객지원 센터, 안전시설 등을 국비 및 지방비를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음.

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음.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에 부과함(「지방세법」 제11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을 설치·개량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확장 및 수리 등
- 3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확장 및 보수 등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 ②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절차 및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중 일부 민간자부담으로 설치된 비·햇빛가리개(아케이드)의 경우 그 소유자가 상인조직인 경우에 한하여 영세상인이 부담하는 회비로는 유지·보수 비용도 부족한 실정에 재산세 등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시세 감면을 통한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제안된 것임.

《현행 감면 지원 내용》

- 취득세 : 100% 경감 ('05년 신설)
- 재산세 : 100% 경감(취득일부터 5년간) ⇒ 자치구세 감면 조례
 - ※ 강서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감면기간(5년) 동일 적용
 - ※ 강서구는 2012년 4월 감면기간 삭제
-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는 100% 과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상인조직)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1.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2.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 2002년부터 전통시장 비·햇빛가리개 설치 보조금 지원은 47개소에 749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자치구가 14개소(비과세), 민간(상인조직)이 33개소를 소유하고 있음.

- 세수영향은 전통시장 내 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비·햇빛가리개 등 시설물 47개소 중 민간 소유 시설물(33개소)에 대하여 연간 3천 3백만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됨.

※ 재산세 과세특례 14백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9백만원

- 집행부는 주요 감면 대상인 아케이드 등 시설물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다수 시민들의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을 위하여 조성된 공익시설이며, 시 재정운용에 큰 영향이 없고, 대형 마트에 비하여 시설환경이 열악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긍정적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 「전통시장 육성법」 제56조에 따르면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

-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함에 따라 새로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취득세·재산세 경감과 중복되어 과도한 혜택이라는 측면과 해당 시설물이 공익시설이고 예상되는 세수감소액이 미미하여 시 재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는 측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재산세 과세특례 및 지역자원시설세는 부동산 보유세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의 용도에 따라 감면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기준일에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면제 될 수 있도록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칙에 시행에 따른 감면일몰제³⁾를 위하여 적용시한, 적용례, 경과조치 등에 대한 추가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과세기준일 : 6월 1일

5.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본 개정안대로 해도 세수감소효과는 미미한 것 같은데, 어떤지?

(답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질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지적대로 소관 부서에서 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적용례, 적용시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답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를 것임.

(질의) 본 개정안에 동의하는지?

(답변) 동의함.

3) 조세를 감면할 때에는 반드시 시한을 두어서, 일정기간 후에는 조세감면의 법적 효력을 자동 중단하도록 하는 제도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재산세 과세특례’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적용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감면일몰규정의 추가규정 필요성에 따라 부칙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1조 중 재산세 과세특례(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면제하는 것으로 감면적용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1조).
- 안 부칙 제3조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함(안 부칙 제3조).

8. 심 사 결 과 : 수정안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9.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779
----------	-----------

제안년월일 : 2012년 7월 9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재산세 과세특례’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적용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감면일몰규정의 추가규정 필요성에 따라 부칙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1조 중 재산세 과세특례(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면제하는 것으로 감면적용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1조).
- 안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효력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수정안조문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 중 “대하여는 취득세와”를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특례(지방세법 제112조 재1항 제2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추징한다.”를 “취득세를 추징한다.”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11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u>취득세를 면제한다</u>.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u>취득세를 추징한다</u>.</p>	<p>제11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u>취득세와 재산세 과세특례(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u>.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u>취득세와 재산세 과세특례(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추징한다</u>.</p> <p>부칙 <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제11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u>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특례(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u>.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u>취득세를 추징한다</u>.</p> <p>부칙 <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u></p>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 중 “취득세를 면제”를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특례(「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u>취득세를 면제</u>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p>제11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p> <p>-----</p> <p>-----</p> <p>-----</p> <p>-----<u>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특례(「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u>-----.</p> <p>-----</p> <p>-----</p> <p>-----</p> <p>-----.</p>